



제424회국회(임시회)
제2차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천하람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986호)

2025. 4.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 지 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천하람 의원안)	3

I. 개요

1. 천하람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4986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천하람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4. 10. 29.
- (3) 회 부 일 : 2024. 10. 30.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8년에 전면 개정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이라 한다)은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회사(이하 “외부감사대상 회사”라 한다)의 요건을 정하고, 외부감사대상 회사 중 일부 법인의 경우 6년동안 연속하여 외부감사인을 자율적으로 선임한 때에는 그 다음 3년 동안 지정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하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등을 도입하였음.

이는 종전에 반복되어 온 대규모 분식회계를 근절하고 회계산업의 선진화를 위하여 도입되었으나, 회계감사 비용이 대폭 상승하여 중소기업의 재정적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였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회계감사의 질적 수준은 유지하되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별도의 세제 혜택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외부감사대상 회사 중 중소기업에 대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회계감사에 대한 보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되, 분식회계 등의 사유로 외부감사법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는 경우 공제받은 법인세를 추징하고, 향후 9년간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도록 하여 회계감사의 신뢰성 제고를 도모하고, 중소기업의 감사 비용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천하람 의원안)

현 행	개정안
☐ <신 설>	☐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에 대한 세액공제(제4조의2 신설) ○ 대상: 외부감사의 대상인 중소기업 ○ 세액공제액: 감사보수 지출액의 10% ○ 사후관리: 「외부감사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 공제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 추징, 다음 9개 과세연도 동안 세액공제 미적용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 적용례: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천하람의원안 2024. 10. 29. 발의(의안번호 4986)

☐ 개정안은 기업의 회계감사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이라 함)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감사보수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지원하려는 것임.

☐ 「외부감사법」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하는 외부감사 대상은 주권상장법인,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인 회사, 매출액 500억원 이상인 회사 등임.¹⁾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외부감사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의 감사인은 동일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 주권상장법인

한편,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등을 계기로 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감사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감사인 지정제도가 2017년 10월 31일 「외부감사법」의 전부개정을 통해 도입되었는데, 감사인 지정제도는 회사가 일정기간 감사인을 자유선임하도록 하는 대신 이후 일정기간은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임.

감사인 지정제도는 주기적 지정제도와 직권 지정제도로 구분됨. 주기적 지정제도는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상장법인(코넥스 제외) 및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법인에 대하여 다음 3개 사업연도 감사인을 증선위에서 지정하는 것임.²⁾

2.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

3. 그 밖에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 부채, 종업원수 또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 다만, 해당 회사가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본문의 요건 외에 사원 수, 유한회사로 조직변경 후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유한회사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받은 회사 중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 등)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가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제10조제1항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정하는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거나 변경선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주권상장법인.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은 제외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회사 가운데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고 대주주 및 그 대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로서 대주주 또는 그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회사의 대표이사인 회사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회사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할 수 있다.

1.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일로부터 과거 6년 이내에 제26조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를 받은 회사로서 그 감리 결과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발견되지 아니한 회사
2. 그 밖에 회계처리의 신뢰성이 양호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주권상장법인 등에 대한 감사인 지정)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감사인을 선임한 회사에 대하여 그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을 선임하거나 변경선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법 제11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이란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법인을 말 한다.

직권 지정제도란 증권선물위원회 감리결과에 의한 감사인 지정조치, 선임기한 내 감사인 미선임 등 투자자보호를 위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임.³⁾

2023년말 기준 외부감사 대상 회사 수는 41,212사로 전년 37,519사 대비 3,693사 증가(증가율 9.8%) 하였음.

[외부감사 대상 회사 현황]

(단위: 사, %)

구 분	주식회사						유한 회사 (비상장)	합 계
	주권상장				비상장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22년 (비중)	819 (2.2)	1,591 (4.2)	132 (0.4)	2,542 (6.8)	34,411 (91.7)	36,953 (98.5)	566 (1.5)	37,519 (100.0)
'23년 (비중)	833 (2.0)	1,680 (4.1)	129 (0.3)	2,642 (6.4)	37,947 (92.1)	40,589 (98.5)	623 (1.5)	41,212 (100.0)
증감 (증감률)	+14 (+1.7)	+89 (+5.6)	Δ3 (Δ2.3)	+100 (+3.9)	+3,536 (+10.3)	+3,636 (+9.8)	+57 (+10.1)	+3,693 (+9.8)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3년 외부감사대상 회사 및 감사인 지정 현황'

자산 규모별로 살펴보면 2백억 원~ 5백억 원이 13,950사 (33.8%), 1백억 원~2백억 원이 12,363사 (30.0%)로 절반 이상을 차지함.

③ 법 제11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직전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5천억원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1천억원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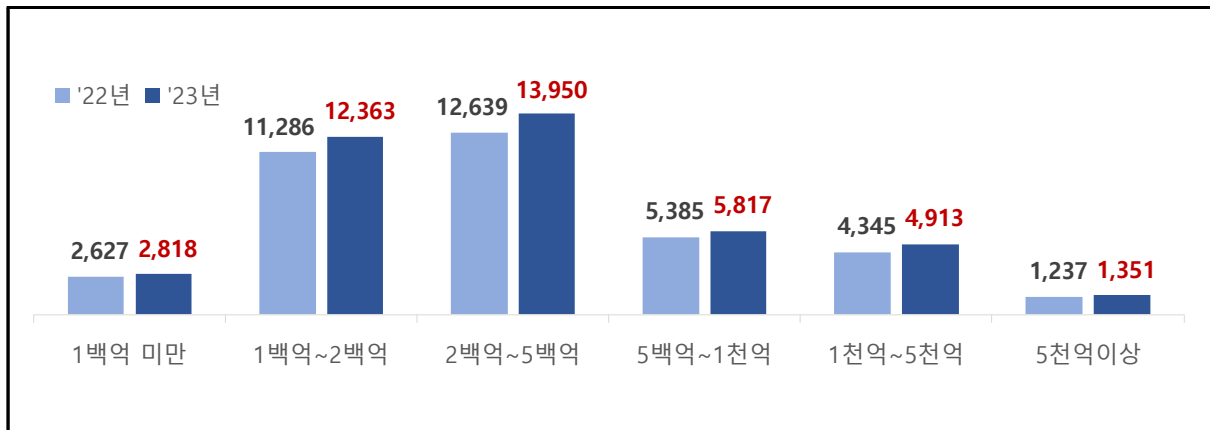
1.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

2.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④ 법 제11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3) 지정사유는 상장예정법인, 감사인 미선임, 감리결과 조치, 상호저축은행법상 지정요청, 관리종목, 횡령·배임 발생 등, 감사인이 재무제표를 대리작성한 회사, 기관투자자인 주주의 지정요청 감사시간이 표준감사시간에 현저히 미달한 회사, 지정기초자료 미제출, 재무기준(3년 연속으로 영업손실, 負의 영업현금흐름, 이자보상배율 1미만), 과거 3년간 최대주주(2회)·대표이사(3회) 변경 등임.

[자산규모별 외부감사 대상 회사 분포]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3년 외부감사대상 회사 및 감사인 지정 현황'

증선위에 의해 감사인이 지정된 회사는 1,667사로 전년 1,976사 대비 309사 감소(감소율 15.6%)하였음. 전체 외부감사 대상 중 지정 회사의 비중은 4.0%로 전년 5.3% 대비 1.3%p 감소하였음.

[외부감사인 지정비율]

(단위: 사, %, %p)

구 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a)	'23년 (b)	증감 (b - a)
전체	지정회사(A)*	699	1,224	1,521	1,969	1,976	1,667	△309
	전체 외감(B)	31,473	32,431	31,744	33,250	37,519	41,212	3,696
	지정비율 (A/B)	2.2	3.8	4.8	5.9	5.3	4.0	△1.3
상장	지정회사(A)*	284	807	1,060	1,256	1,152	994	△158
	전체 상장사(B)	2,230	2,326	2,382	2,457	2,542	2,642	100
	지정비율 (A/B)	12.7	34.7	44.5	51.1	45.3	37.6	△7.7

* 지정시점 기준 예) '23년에 '24사업연도 감사인을 지정 한 경우 '23년 지정회사로 간주하고 계산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3년 외부감사대상 회사 및 감사인 지정 현황'

이러한 감사인 지정제도의 도입에 따라 대규모 분식회계가 근절되

고 회계산업이 선진화되는 성과가 있었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회계감사 비용 상승으로 기업의 부담의 증가하였다는 지적도 있음.

- 개정안은 최근 감사인 지정제도 도입 등에 따라 감사보수가 상승한 점을 고려하여 감사비용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려는 것으로서, 회계감사에 따른 중소기업의 비용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지정감사인 제도 도입 이후 상장사의 감사보수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에 있는데, 2017년에서 2022년 사이 매년 감사보수가 7~29% 상승하였으며, 해당 기간 동안 연평균 상승률은 17.8%임. 상장회사 평균 감사보수는 2017년 1억 2,132만원에서 2022년 2억 7,561만 5,000원으로 증가하였음.

[상장사 감사보수 변동 추이]

(단위: 천원)

자산규모별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총 상승률	연평균 상승률
상장회사 평균 (전년대비 상승률)	121,320	138,320 (14%)	175,616 (27%)	225,919 (29%)	241,925 (7%)	275,615 (14%)	127.2%	17.8%
2조 이상	553,687	625,699	923,077	1,078,019	1,121,709	1,156,386	108.9%	15.9%
5천억~2조	168,893	187,977	227,455	351,871	367,015	394,691	133.7%	18.5%
1천억~5천억	84,147	95,725	112,427	144,727	156,020	201,055	138.9%	19.0%
1천억 미만	60,914	70,226	77,481	105,387	115,793	116,894	91.9%	13.9%

자료: 금융위원회,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2023. 6.)

이러한 감사보수의 증가는 감사시간 증가와 시간당 감사보수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로 인한 기업부담은 기업규모가 작은 중소

기업에게는 가중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러한 세제혜택 제공을 통하여 기업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현재 감사보수 수준이 기업에 지나치게 큰 부담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상장기업의 시간당 감사보수는 2006년(97,000원)과 2020년(98,000원 수준)의 차이가 거의 없었으며, 해당 기간의 물가상승률(약 30%)을 고려하면 2020년의 시간당 감사보수는 오히려 2006년보다 감소하였다는 연구결과가 있음.⁴⁾

또한, 2021년 기준으로 매출액 대비 상장사 감사보수의 비율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유럽과 비슷한 수준이고 미국과 캐나다에 비해 낮은 수준임.

[상장사 매출액 대비 감사보수 비율]

(단위: %)

구분	우리나라	미국	캐나다	유럽
상장사 매출액 대비 감사보수 비율	0.17	0.44	0.33	0.15

자료: 금융위원회,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2023. 6.)

둘째, 회계감사 비용은 기업이 이해관계자에 대한 수탁책임을 이행하고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 통상적인 비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제도 변화 등으로 감사보수의 상승효과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기업

4) 안혜진·한승엽·전규안, 「상장기업 감사보수 변화와 국가별 비교를 통한 시사점」, 한국회계학회, 회계저널 <32-1>, 2023. 1., p.136.

에 발생하는 다른 비용들과 다르게 특별히 취급하여 세제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함.

셋째, 개정안은 동 세액공제를 영구적으로 도입하려는 것인데, 적용기한이 없는 상시적인 조세특례는 타당성·효과성 등 제도 전반에 대한 주기적 평가가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으며, 다른 조세특례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특히, 추후 지정감사인 제도 등의 변화에 따라 감사보수 수준이 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감사보수 수준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평가하여 동 조세특례의 연장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이 있음.

문 의 처
02)6788-5154